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연월일: 2019년 12월 17일

발 의 자: 김용석, 이병도, 성흠제,

이광호, 채유미, 문장길, 노승재, 채인묵, 정진철,

김종무, 장상기, 추승우

의원 (12명)

의 안 번 호 1228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・②	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	③
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	
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	
하 "법"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른	
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
	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
	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
	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
	<u>다.</u>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